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9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0019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확대(30% → 50% 이상) 등 (안 제29조의2제1항 개정, 제2항·제3항 신설)	3

I.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0019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

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3. 검토의견

가.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확대(30% → 50% 이상) 등

(안 제29조의2제1항 개정, 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u>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u>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 ----- ----- ----- ----- ----- ----- ----- ----- -----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을 신규 채용 인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이전지역인재가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다른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라 한다)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u><신설></u>	③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의 구분 및 범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¹⁾에서 비율을 구체화하면

서 2022년도 이후부터는 채용의무 비율을 30%로 상향하였음.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채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함과 아울러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이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인재까지 채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지사를 보유한 이전공공기관등은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순환 근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한편,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²⁾·공공기관 채용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해당연도	비율(%)	도입연차	비율(%)
가. 2018년도	18.0	가. 1년차	18.0
나. 2019년도	21.0	나. 2년차	21.0
다. 2020년도	24.0	다. 3년차	24.0
라. 2021년도	27.0	라. 4년차	27.0
마. 2022년도 이후	30.0	마. 5년차 이후	30.0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

등에 도입되어 있음.

특히,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2024. 8. 14. 시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었음³⁾.

지역인재의 기준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법률은 지방대학 출신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지방대육성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⁴⁾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느 하나의 법률만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 취업 및 채용 부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대육성법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안번호 220109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함.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차이】

구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채용비율	100분의 30	100분의 35
채용대상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
채용기관	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기타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의무채용비율의 경우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비율 상향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전지역인재 의무 대상 확대 관계기관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한국석유공사 (반대)	○ 지역인재 50% 선발 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용 인원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음. - 공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채용 신입직원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인재로 채용하여 별도의 법정 의무비율 상향은 미필요
기술보증기금 (반대)	○ 부산 지점은 9.2%에 불과, 이전지역(부산)인재를 50% 이상 계속 채용 시 전국 단위 인사배치와 인력운영이 어려우며, 여타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비율은 100분의 35가 합리적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률에서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제도사례⁵⁾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갈등 우려가 있으며, 현행 제도의 경우에도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1

5) (공무원임용령) 서울 제외 지역인재 채용비율 20%(7급 30%), 양성평등 채용비율 30%